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논문집

[부속규정 2 논문심사규정]

2007년 04월 16일 제정
2009년 07월 10일 개정
2014년 06월 09일 개정
2018년 04월 2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적정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위원의 위촉 및 역할

1. 논문심사는 관련전공분야의 3인에 의한 전문가 심사자(이하 심사위원)에 의한다. 논문의 전공분야를 논문위원장이 분류하여 논문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전문가 심사는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술적 기여"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2. 심사위원에게 심사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초심은 21일(3주) 이내, 급행 심사의 경우는 초심 14일(2주) 이내, 재심 이상은 14일(2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급행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하며, 다시 4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5. 심사위원이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심사

1. 논문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술적 기여"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2. 제5조 심사결과는 논문체제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전문가 심사 3인의 결과에 따라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로 구분한다.
 - (1) "게재가" 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게재" 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논문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다만,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3) "수정재심" 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수정한 후 논문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4)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30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30일) 이내에 저자로부터 아무런 회답이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게재불가" 로 처리된다. 단, 투고자의 합당한 사유(장기 해외 출장, 논문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가 있을 경우에는 투고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1회(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논문의 게재

- (1)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
- (2) "수정재심" 판정은 그 다음 판정의 결과에 따른다.
- (3)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채택)되지 않는다.

4.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게재" 또는 "수정재심" 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2) 표와 그림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2)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7.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표절, 중복 게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게재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논문위원장은 제2조에 근거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논문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논문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기타

1.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2. 본 학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게재 예정 사항을 알린다.

3. 본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